

검 토 의 견 서

- 일 시 : 2021. 4. 26.(월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「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(의안번호 제2271호, 박순규 의원 대표발의)

행 정 국

-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.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 채유미·한기영 부위원장님.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- 박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71호
「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
특별법」상 제1~제3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
‘배움관 등 인재개발원 시설물’에 대하여
 - 파손 또는 노후화 등의 안전상 사유로 시설물을
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 -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
취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
것입니다.
- 시설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
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4. 26.

행정국장 김 태 균